

적폐청산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과(B.A.), 신학대학원(M.Div.), 미국 Westminster 신학교(Th.M.)에서 조직신학,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Th.D.)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공부했으며,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기독교윤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른 바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 작업의 윤리적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들에 근거한 것들인가? 이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들에 근거한 것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라면 적폐청산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아 올 것이다. 둘째로,

적폐청산 작업은 결국 법적인 공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법적 공방이 공정한 과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념적 정치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두 개의 질문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 곧,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답변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 편향성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핵심 요직들에 주체사상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주체사상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체사상파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인사들이 그 후에 어느 정도나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성(性)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뚜렷하고 고집스러운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양성개념을 배제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철학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정치철학의 기반 위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

화하는 것을 선거공약과 당론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곱 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무산되자 오기를 부리듯이 아예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온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초법적 발상을 통하여 이를 바 “동성애 독재”를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의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해 온 우리 법 연구회 인사들을 임명하여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다. 그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성(gender)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집요한 시도, 차별금지법제정 시도,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려는 시도들이 집

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일체의 건실한 비판적 의견의 개진을 차단함으로써 광주 금남로와 대전에서 수만 명 이상이 모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 집회 소식도 일체 보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3000명이 넘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반대성명을 낸 사상 초유의 사건도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언론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이 운동을 폄훼하고 비꼬는 기사들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 주는 이 같은 뚜렷한 이념적 편향성이 적폐청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폐항목들의 사실성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적폐항목들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폐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의 여부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전혀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견된 비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촉발되기만 한 것이 사실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사례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확실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 올만한 것이라는 검찰의 견해는 사실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는가? 그동안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온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시도가 정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첨예한 청탁을 전개

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파견한 간첩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남파간첩을 검거하려는 시도들 조차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상에 열거한 일단의 질문들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세가지 조건

그러면 적폐청산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필자는 세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한 이념적인 정치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거나 인적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얼마 전 검찰총장이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청와대는 적폐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우리 사회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이 적폐청산 작업은 임기 내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에둘러서 검찰총장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좌파적 정치철학의 기반 위에 집권한 현 정부가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구조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실 어떤 정당이든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 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해 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가 우파적인 정치철학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고 해

적폐란 윤리적 차원에서
통치자의 왜곡되고

부패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통치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공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의의 원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통치행위이다.

서 적폐라고 볼 수는 없다. 우파의 정책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좌파의 정책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파의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책이 공동체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분배의 정의를 약화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과 사회의 창의적인 혜력과 효율을 증진시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 공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좌파의 정책은 분배의 정의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정직성과 노동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전체를 한층 더 빙곤한 상태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것도 역사적 현실이다.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당은 일정한

정치철학을 정당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여와 야, 좌와 우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기 정당의 이념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한 정당의 정치철학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국민들을 심각한 이념적 분열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념의 허구성 곧, 유토피아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념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현실을 교정하는 비판적 규범 정도로 기능하지 않고 현실화를 위한 실제 목표로 설정되면 사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기 당의 정치철학의 근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복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 당의 정치철학을 교정하기도 하고 반대당의 정치철학의 원리도 받아들이기도 하는 등의 타협과 포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적폐의 대상에 대한 답변

그러면 진정한 적폐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하고자 한다. 하나는 개인 윤리적 차원을 전제한 것으로서 통치자의 왜곡되고 부패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통치행위가 적폐임을 말하고자 하며, 다른 하나는 사회 윤리적 차원을 전제한 것으로서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적 이성 곧 정의의 원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통치행위가 적폐임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공직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규범적 원리들에 대한 이해와 내적인 덕성의 훈련을 갖춘 상태에

서 공직 수행에 임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며, 모든 윤리적 실천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고전적인 기독교윤리학의 명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공직자의 공직수행에는 그가 견지하고 있는 규범적인 원리들과 이 원리들을 실천에 옮기는 내적인 덕의 자질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공직자가 상대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효율주의, 유물론적 윤리 등과 같은 왜곡된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그의 공직수행을 비집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피해는 막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규범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과 이기적인 대중들의 조작된 다수의 의지를 따를 경우에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은 건강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취약한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생명윤리의 현주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초기의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보는 유물론윤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복리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가 왜곡된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성애나 동성혼과 같은 왜곡된 성적 관행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우리 사회의 성윤리의 현주소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마음의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공금을 개인적인 명의로 착복하는 온갖 유형의 재정 비리와 부패관행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공직자들은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과 각 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적

인 행동원리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사회 전체는 유기적인 생물체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닌다. 한 국가가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사회도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니고 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특수한 영역들로서 분화되어 있다. 개혁주의의 전통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가 국가와 사회의 영역을 구분하고, 사회의 각각의 영역들을 종교, 교육, 기업, 가정, 문화 등의 영역들로 다시 구분하여 파악하는 영역주권론(sphere sovereignty)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했으며, 존 롤즈(John Rawls)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등과 같은 현대 사회계약론 철학에서는 공적 사회(the public society)와 사적 사회(the private society)로 구별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구분이다.

롤즈에 따르면 공적 사회는 기본적 사회구조(the basic social structure)로서 정치경제적 구조를 의미하며, 국가와 시장에 여기에 속한다. 기타 다른 사회적 기관들은 사적 사회로 구분된다. 롤즈는 공적 사회는 이를 바 공적 이성(the public reason)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도예베르트는 공법적 구조적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롤즈가 말하는 공적 이성이란 곧 정의의 원리를 말하며, 정의의 원리는 바로 공정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도예베르트가 말하는 공법적 구조적 원리도 정의의 원리에 다

름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청산은 결국 법적 공방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이 작업은 결국 공적 사회의 일이자 국가의 일이며, 좀 더 좁게 말하자면 사법부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롤즈와 도예베르트가 공적 이성과 공법적 구조적 원리를 강조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롤즈는 차별의 원리를 말하는 경제정의의 원리에서는 사회의 한계계층의 생존권 보존을 위하여 특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정치적 정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극히 강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롤즈는 정의의 원리를 말하는 첫 단계에서 무지의 막(the veil of ignorance) 개념을 사용하는데, 무지의 막이란 공동의 논의의 현장에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의의 당사자들이 처한 특수한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통분모에만 철저하게 근거하여 원리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어떤 특수한 이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무지의 막을 친 다음에 합의한 원리들이 바로 순수한 과정적 정의, 완전한 과정적 정의, 불완전한 과정적 정의인데, 이 세 가지 정의들은 의미의 차이들이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이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예베르트가 공법적 구조적 원리를 강조할 때도 국가권력이 인종주의와 권력주의 그리고 경제주의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물론 롤즈나 도예베르트의 국가론이 종교나 철학, 윤리사상 등이 공적 영역에서 차지하고 또 차지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사회를 이원적 구조 속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 영

역의 운영이 사회 안의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념들에 의하여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깊다.

공적 영역 안에서 진행되는 법적 공방을 의미하는 적폐청산은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념에 휘둘리거나 그 이념의 실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한다. 촛불 집회로 묘사되는 민중의 의지가 “천심은 민심”이라는 금언에 충실히 천심이 담긴 민심을 반영할 때도 있으나 제한된 정보전달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민중들 다수의 의지는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엘리트들에 의하여 조작된 의지를 반영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사회가 다수의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집권여당의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든지 특정한 집단이 여론몰이를 통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나서는 관행은 공적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직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왜곡된 윤리적인 규범적인 원리들이나 공직자의 부패한 자질이 반영되어 있을 때, 공직자들이 공정한 법적 절차를 깨뜨렸을 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집단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